

제 1304호  
1986.7.31

발행처: 서울특별시 관공서  
전화: 781-6111-3  
785-3337

간행처	공보관	간행처	간재(공란)	공보처	간행처
집필자	1336	시	공	공	공
차라과	2101	공	공	공	공

# 시보

## 차 례

- ◎ 조 례
  - 제 2091호 : 서울특별시세조제중개정조례 ..... 2
  - 제 2092호 : 서울특별시세입징수센터중개정조례 ..... 2
- ◎ 공 고
  - 지 436호 :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및 관계도면공람 ..... 4
- ◎ 사 령

공									
람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  
604

**조 례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 
상세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  
포한다.

1986. 7. 31

서울특별시장 염보현

◎ 서울특별시시조례제 2091 호

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 
정한다.

제 14 조 (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액 결  
정기준일) 제 2 항중 제 1 호를 다음  
과 같이 개정한다.

1. 토 지 : 매년 8월 1 일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
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 
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  
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6. 7. 31

서울특별시장 염보현

◎ 서울특별시시조례제 2092 호

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 
개정조례 (안)

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 
중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3 조 제 1 항 제 1 호중 " 1 건당 200 원  
이상 2,000 원 미만에 대하여는 1 건당  
100 원, 2,000 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  
수액의 100 분의 5 "를 "해당 1 년 차분  
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 분의 3, 제  
남 2 년차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  
의 100 분의 5 "로 한다.

제 3 조 제 2 항을 삭제한다.

제 6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)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내지 제  
4 호의 포상금 지급신청 사유 발생  
시는 구청장은 별지 제 3 호 서식  
에 의한 세원발급포상금 지급신청  
서를 익월 7 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 
하여야 한다.

제 6 조 제 1 항중 별지 제 3 호 서식을  
별지와 같이 한다.

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7 조 (포상금지급)

- 1) 시장은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에  
의한 포상금을 구청장에게 예산으  
로 배정하고 구청장은 그 징수액  
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.
- 2) 시장은 제 6 조의 신청서에 의한  
포상금은 이를 심사확인하여 매월  
15 일까지 지급한다.
- 3)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에 해당하  
는 포상금은 해당징수액의 수납이  
확인된 후에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개정(안)

(별지 제 3 호 서식)

기 관 명

분류기호: (전화) 19

수 신: 발 신

참 조:

월분 세원발굴포상금 지급 신청서

1) 수 분	2) 전 수	3) 금 액			7) 포 상 금
		4) 세 액	5) 가 산 금	6) 계	

첨 부 : 세원발굴내역서 1부

작성요령: 1) 란은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내지 제 4 호의 지급 구분 사유 기재

**공 고**

Ⓢ 서울특별시공고제 436 호

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  
관계도면공람

1. 하수도법 제 6 조 ( 제 13 조 ) 에 의거 서대문구청 토목 30350- 호로 설치 인가된 공공하수도 설치 ( 변경 · 신설 ) 가 완료 되었기 하수도법 제 9 조 규정에 의거 15 일간 일반인에게 공 고 및 공람 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토목과에서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2.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별도 통지는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가 립한다.

1986.7.31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용개시일월일: 내역참조  
나. 배수구역: 하수관망도면 참조 ( 서대문구 청 " 토목과 비치 " 도면생략 )  
다.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: 서대문구청 토목과 비치  
라.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합류 식 도: 분류식의 구분 ( 합류식 )  
마. 공람기간: '86.8.1 - 8.15

인가번호	공 사 명	위 치	사용개시 년 월 일
2	북아현동 240 의 37- 시민아파트간 하수도 공사	북아현동 229, 236	5.30
3	북가좌동 376-385 간의 8 개소 하수도 공사	북가좌동 377, 314, 124, 100, 105, 75, 80, 305	6.20
4	연희동 340 의 45-310 의 6 간 하수도공사	연희동 309-194 일대	4.22
5	홍은동 265 번지의 2 개소의 1 건 하수도공사	홍은동 265-207 일대	5.30
6	홍은동 8 번지의 2 개소 하수도 공사	은동 8, 9, 10 번지 일대	5.31

인가번호	공 사 명	위 치	사용계시 년 월 일
7	남가좌동 181-216 일대 하수도공사	남가좌동 216 일대	6.30
8	홍은동 392 의 3 개소 하수도공사	홍은동 392, 397 남가좌동 421, 412	6.27
9	북가좌 1 동 384 의 1-384 의 19 간 하수도공사	북가좌동 384 북아현동 148	5.19
10	창천동 493 의 3 개소, 남가좌동 244 의 1 개소 하수도공사	창천동 493, 남가좌동 244	6.30
12	명지여고 진입로 개설공사	홍은동 356-361 번지	7.22
13	홍은 3 동 427-432 간 도로교 장공사	홍은동 427-432	4.26
14	이화국교 주변도로교상공사	대신동 31-22	5.30
15	북아현 2 동 240 의 37-220 의 1 간의 1 개소 도로정비공사	북아현동 223-220	4.30
18	남가좌동 124-145 의 8 개소 하수도공사	남가좌동 237, 239, 216, 335, 244, 164, 151, 145	6.18
19	홍제동 266 의 2 개소 및 명천동 120 의 3 개소 하수도공사	홍제동 266, 명천동 120, 81, 7	6.18
20	서울여상주변 하수도공사	홍제동 24	6.31
21	홍제동 80 의 2 개소 하수도공사	홍제동 88, 61, 44	5.31
22	홍제동 64 의 13-38 의 14 간	홍제동 64	5.21
23	연희동 131 번지수변	연희동 133, 134, 90, 89	6.30
24	북아현동 237-대현동 65 간 도로교장공사	북아현동 237	5.12
27	연희동 100 의 3-196 의 6 간 도로정비공사	연희동 100, 106	5.30

인가번호	구 사 명	위 차	사용개시 년 월 일
28	충정로동 1번지의 1개소 도로정비공사	충정로 3가 31- 북아현동 1-3	6.31
29	창천동 33-114 주변 도로정비공사	창천동 500-100	5.31
32	북가좌동 3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	북가좌동 337번지	7.20
33	북가좌동 124-421 간의 1개소 도로정비공사	북가좌동 124-421	7.20
34	북가좌동 313 주변의 3개소 도로정비공사	북가좌동 292-252	7.20
36	대현동 110 의 20-104 의 25 간의 1개소 하수도공사	대현동 110, 104, 37	4.17
37	충정로 3가 31-34 간의 2건 하수도공사	충정로동 189, 31, 185	6.30
38	북아현 1번지 도로정비공사	북아현동 1-195	6.30
39	연희동 444 의 3개소 상·하수도공사	연희동 446-537	6.28
관리청	연희동산 5-11 의 1필지 (민영주택)	연희동산 5-41	85.123
"	남가좌동 288-6 의 1필지 (토지형질변경)	남가좌동 288-6	86.1.6
"	연희동 168-2 의 6필지 (민영주택)	연희동 168-2	4.20
"	연희동산 4-29 의 3필지 (토지형질변경)	연희동산 4-29	5.21
"	홍은동 265-26 의 1필지 (토지형질변경)	홍은동 265-26	7.4

사 령

◎ 1986년 7월 30일자

령개 337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최 중 조	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, 2호의 규정에 의거 "전채"에 처함.	청소과작업관리 2계장	지방행정사무관
김 덕 수	상 동	시립대학경리계장	
정 종 안	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거 "전채"에 처함.	용산구주택과장	

령개 328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박 대 수	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거 "전채"에 처함.	용산구도시정비국장	지방서기

서 울 특 별 시